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가경정 제3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68,757,133	41,062,714
일반회계	999,369,399	29,981,082
특별회계	369,387,734	11,081,632
공기업특별회계	178,117,914	5,343,537
상수도사업	93,672,944	2,810,188
하수도사업	84,444,970	2,533,349
기타특별회계	191,269,820	5,738,095
공유재산관리	78,732,493	2,361,975
의료급여기금	4,831,762	144,953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생활안정기금운영	1,180,017	35,40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	592,554	17,777
교통사업	52,264,767	1,567,943
도시철도건설사업	22,506,285	675,189
도시재정비촉진	17,847,168	535,415
도시개발	13,314,774	399,443

제 2 조 세입 ·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와 같다.
단, 각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으로 한다.

제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5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606,823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4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29,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